

## 제 5절 환어음과 환율

### 1. 환어음

#### (1) 환어음의 의의

환어음(bill of exchange)이란 어음상의 지급금액을 지급기일에 어음상의 권리자(수취인 또는 지시인)에게 무조건 지급할 것을 어음의 발행인이 어음의 지급인에게 위탁하는 유가증권이다.

오늘날 무역거래에서 수출자들은 수출대금의 회수를 위해 대부분 환어음을 발행하고 있다. 수출물품을 선적한 수출자는 선적서류를 첨부하고 수입자 앞으로 환어음을 발행하여 수출대금의 지급을 요청하게 된다. 따라서 환어음의 발행인은 수출자이고 지급인은 수입자 또는 수입자가 지정한 거래은행이 된다.

수취인은 환어음의 지급금액을 지급받는 자이며, 발행인이 발행인 스스로를 지명할 수도 있고 또는 제3자가 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수출자(발행인)는 자기 거래은행을 수취인으로 지명하여 수출자의 거래은행이 수출자를 대신하여 수입자 또는 수입자가 지정한 수입자의 거래은행으로 부터 대금을 지급받도록 한다.

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환어음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행할 때에는 환어음의 효력에 대한 준거법으로 행위지 국가의 법을 따르고 있다. 즉, 발행에 관해서는 발행지 국가의 법이 적용되고 지급에 관한 행위에 대해서는 지급지 국가의 어음법이 적용된다.

#### (2) 환어음의 종류

##### 1) 무담보환어음과 화환어음

무담보환어음(clean bill of exchange)은 환어음 그 자체만으로 결제가 결제가 될 수 있는 어음이며, 주로 운임, 수수료, 보험료 지급 등에 이용되지만 최근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화환어음(documentary bill of exchange)

은 선적서류가 첨부된 어음으로 수출대금의 결제용으로 사용된다. 환어음에 첨부될 선적서류는 매매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 2) 일람불환어음과 기한부환어음

일람불환어음(sight bill of exchange)은 지급인에게 제시된 날에 즉시 금액이 지급되는 어음이며, 기한부환어음(usance bill of exchange)은 제시된 날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지급이 이루어지는 어음이다. 기한부환어음의 지급유형은 일람 후 정기출급, 일부 후 정기출급, 확정일 출급으로 구분된다. 일람 후 정기출급의 경우는 지급인에게 환어음이 제시된 날로부터 지정된 기간 후에 지급되며, 일부 후 정기출급의 경우는 발행일로 부터 지정된 기간 후에 지급되고, 확정일 출급의 경우는 환어음상에 구체적인 지급일이 명시되어 있다.

## 2. 환율

### (1) 환율의 의미

환율(exchange rate)이란 서로 다른 국가의 통화 간의 교환비율을 말한다. 이 교환비율은 각국 통화의 대외적인 가치와 상품구매력을 나타내고 있다. 환율에 따라 수출입대금 결제와 관세의 세액결정 과정에서 비용과 이익이 달라지므로 매일의 환율변동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환율은 외환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외환에 대한 시장가격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각 외국환은행은 외국환 거래에 적용할 환율을 매일 고시하게 된다.

### (2) 환율의 고시방법

외환시장에서 환율을 고시하는 방법은 ① 외국환 1단위에 대하여 자국 통화의 교환대가를 나타내는 직접표시방법 ② 자국통화 1단위에 대한 외국통화의 교환대가를 나타내는 간접표시법 ③ 그리고 미화 1달러에 대하여 각국 통화의 교환 대가를 나타내는 미 달러 표시법이 있다.

### (3) 환율의 유형

한편 환율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그 중 대표적으로 외환시장의 매매율, 외국환 은행간 매매율, 매매기준율, 외국환은행 대고객매매율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외국환은행 대고객매매율(customer rate)은 외국환은행이 고객과 외환거래를 할 때 적용하는 환율로서 매 영업일마다 외국환은행장이 외국환 은행간 매매율을 기준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정하여 적용한다. 외국환은행 대고객매매율의 세부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전신환(Telegraphic Transfer : T/T) 매매율 : 환어음의 결제를 전신으로 행하는 경우 적용되는 환율로서 환어음의 송달이 1일 이내에 완료되므로 우송 기간동안의 금리가 환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순수한 의미의 환율이며, 타매매율 결정의 기준이 된다.

② 현찰매매율 : 외국환은행이 고객과 외화현찰거래를 할 때 적용하는 환율이다.

③ 일람출급환어음 매매율 : 일람출급환어음의 매매에 적용되는 환율로서 환어음의 우송기간에 대한 금리를 전신환 매매율에서 가감하여 정한다.

④ 기한부어음 매입률 : 기한부환어음을 매입할 때 적용하는 환율로 일람출급환어음 매입률에서 어음기간동안의 금리를 차감한 것이다.

## 제 6절 선적서류

### 1. 선적서류의 의의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s)란 수출화물의 선적을 증명하는 제 서류를 말하며,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그냥 서류 (documents)라고 부른다. 수출자는 화환(貨換)어음의 담보로 선적서류를 이용하게 되며, 수입자는 수입물품의 인수를 위하여 사용하게 된다.

신용장에 기입된 내용에 따라 서류의 종류가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필수적인 서류와 기타 부속서류로 구분하고 있다.

무역거래에서 가장 필요한 서류로서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선하증권(또는 운송서류), 보험증권, 상업송장 등이며 기타 서류로는 포장명세서, 원산지 증명서, 품질증명서, 검사증, 용적 및 중량증명서 등이 있다.

### 2. 운송서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 등이 있으며, 운송물품의 인수확인 또는 영수증으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소유권 증명으로서의 역할도 하게 된다.

#### (1) 선하증권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은 운송위탁인(화주)과 운송회사(선박회사)간에 체결한 해상운송계약을 근거로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이 증권은 운송화물 수령을 확인하고 운송목적지에서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운송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선적된 화물을 대표하는 증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선하증권의 소지자는 선박회사에 대하여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화물에 대한 소유권리증 뿐만 아니라 채권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배서 또는 인도하여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

## (2) 항공화물운송장

항공운송은 선박운송에 비하여 수송기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을 갖는다. 항공화물운송장(AWB; Air Waybill)은 항공운송 계약에 화물의 수령확인, 영수증, 세관신고서로서의 역할 등을 한다. 항공화물운송장은 선하증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지만 항공화물운송장은 운송목적지에서 명기된 수하인에게만 전달된다는 차이점을 갖고 있으며, 대표적인 차이점은 <표4-7>과 같다.

<표 4-7> 선하증권과 항공화물운송장의 특성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작성인	선박회사	운송의뢰인
발행시기	선적완료 후	장고반입 후
수하인	무기명 또는 지시식	기명식
양도성	있음	없음

## (3) 기타

기타 신용장에서 이용되며, 선하증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운송서류는 철도화물상환증, 트럭화물상환증 등이 있다.

## 3. 보험증권

### (1) 보험증권의 의의

보험이란 운송과정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험회사가 보상하여 줄 것을 약속하고 피보험자는 그 대가로 보험료를 지불하는 제도이다. 운송화물에 대한 보험성립을 증명하는 서류는 보험증권(Insurance Policy)이며, 이외에 보험증명서(Insurance Certificate)나 보험승인서(Cover Note)가 간혹 사용된다.

보험증권은 운송거래마다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개별 보험증권이 발행된다.

보험증권은 유통성 증권(Negotiable document)이어야 하며, 보험조건의 확인을 위하여 보험증권에 보험약관이 첨부되어야 한다. 보험증서는 동일 물품이 반복적으로 운송될 때마다 사전에 발급받은 포괄보험증권에서 보장하는 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한편 보험승인서는 보험가입이 완료된 사실에 대한 보험영수증 수준의 역할만 하고 있다.

한편 선적서류로서의 보험증권은 해상보험증권을 의미한다.

## (2) 해상보험증권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이란 해상운송사고로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위한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해상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하는 보험계약자, 보험료를 받아 해상위험을 부담하는 보험자, 그리고 보험대상물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받는 피보험자로 구성된다. 수출입 매매계약의 조건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 차이가 있다. FOB계약에서는 수입자가 보험계약자인 동시에 피보험자가 된다. 반면 CIF 계약에서 수출자가 보험계약자가 되고 수입자가 피보험자가 된다.

해상보험증권은 1981년 UNCTAD가 채택한 신양식을 적용하며, 주요 기재 사항으로는 피보험자 성명, 선적항과 도착항, 선박명, 출항예정일, 보험금액, 보험목적물 등이다.

신양식의 해상보험증권의 약관은 앞면의 본문약관과 뒷면의 협회적하약관으로 구분된다. 본문약관은 보험계약 성립을 위한 기본약관이며, 협회적하약관은 보상책임범위에 대한 약관으로서 보상 시 기준이 되는 주요보험약관이다.

## 4. 상업송장

송장(Invoice)은 원거리에 떨어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발송하는 선적화물의 계산서 및 내용명세서이며, 상업송장과 공용송장으로 구분한다. 무역거래에서의 송장은 상업송장을 의미하며, 수출자가 작성하여 환어음 및 다른 선적 서류들과 함께 수입자에게 보내는 필수적인 서류이다.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은 거래물품의 단가, 부대비용, 보험료, 총금액, 지불방식, 지불시기 등이 표기하고 있으며, 거래계산서 및 대금청구서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환어음의 발행금액과 상업송장의 총액이 일치하여야 한다. 또한 수입상품의 내용과 그 정확성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수입통관 시 세관신고의 증명자료로서도 중요하다.

## 5. 기타 서류

기타 서류로는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품질증명서, 검사증, 용적 및 중량 증명서 등이 있다. 포장명세서(Packing List)는 기타 서류 중 하나이며, 외관상 구분하기 어려운 포장된 운송물품의 구분을 위하여 발행되는 서류이다. 기재내용은 포장단위번호, 포장단위별 명세, 포장단위별 순중량 및 총중량, 포장단위별 수량과 일련번호, 용적 등이다.